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172 강간미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피 고 인 A

검 사 안주원(기소), 박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국

판 결 선 고 2026.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가명, 여, 50세)는 위 노래방에서接客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4. 6. 30. 03:20경 일행 2명과 함께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방문하여 B를 비롯한 총 3명의 여성接客원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B와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09경 B에게 1시간 동안의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B와 함께 도보로 구미시 C모텔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6:34경 위 모텔 D호 객실로 들어가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7:3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맞춰놓았던 1시간 타이머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듣고 '이제 가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아직 사정을 못 하였는데 왜 가냐, 가려면 돈을 돌려주고 가라', '곧 끝낼 테니 가슴과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고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사장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거둬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문 쪽으로 향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까지 끌고 와 눕힌 뒤,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려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추고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푸는 등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제압한 뒤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5분간 계속해서 몸을 일으키려 하고, 양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붙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 내역 붙임), 입금 내역 촬영물,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한 동영상 확인), 동영상 캡처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결과), CCTV 캡처 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관하여), 출동경찰관이 작성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시간대별 분석 내용), 수사보고서(이체 내역 촬영), 이체내역 촬영물, 수사보고서(녹취록 작성),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요약정리 및 판단)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경찰보관용)

1. 감정서, 감정 결과에 대한 질의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감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수감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긴 하였으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직후 112신고를 하였고 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및 말,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당시 있었던 상황, 강간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씻고 나온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빨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 자궁경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에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는바¹⁾,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빨강게 변해있고, 팔 부위에도 빨강게 변한 모습이 확인된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잡힌 자국이 있다고 되어있다.²⁾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같이 있자고 권유했을 뿐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은 현장사진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간 것으로 보인다.

④ 피해자는 당시 112신고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가족들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이 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사건화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도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받았으며,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피해 진술을 하였다. 달리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꾸며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나 객관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증거기록 제3권 제147쪽 이하, 제189쪽 이하, 제1권 제13쪽 이하

2) 현장사진은 증거기록 제3권 제51쪽 이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은 증거기록 제3권 제112쪽 이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8-26

재판장 판사 한동석 _____

 판사 최자윤 _____

 판사 김창덕 _____